

7월부터 달라진 환경행정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본격 시행 7월 15일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정수처리기술기 준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지표미생물 관리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됐다.

지난 6월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한강수계에만 적용돼 오던 수변구역 지정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등이 특별법에 따라 지난 7월 15일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서도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 댐 상류하천 일정구간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됐다.

또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사용이 적정수준 이내로 제한되며, 낙동강 본류 및 제1지류의 인접지역에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신규개발시에는 초지, 녹지,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안의 토지는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낙동강 유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폐수 등이 직접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자발적인 노력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의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득증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본격 시행 7월 15일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정수처리기술기 준제가 도입되고 수질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지표미생물 관리기준 강화제도가 시행됐다.

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폐수배출시설 및 종말처리시설을 적정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먹는물의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소독과 여과공정을 강화해 병원성미생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정수처리기술기준이 도입되며,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검사주기 단축 및 초과원인분석, 시설개선 등 조치사항을 규정해 시행토록 했다. 또한 종래에는 병원성미생물의 관리지표로 대장균군만을 이용했으나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해 분원성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꼭지의 대장균군 기준에 확률개념을 도입했다.

폐기물분야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제도 개선에 따라 유통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에 물건을 담은 후 가정에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가 보급되며, 1회용 비닐봉투도 별도로 분리수거해 재활용된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배출했던 대형폐기물은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배출하거나 전담수거업체를 통해 배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을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처리비용을 공동부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도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지방환경관리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권이 산업단지내외 구분없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며, 중앙에서는 4대강 환경감시대를 정규화하여 상습위반업체, 상수원유역 배출업소 등에 대해 특별기동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0월부터 배출업소 관리권 지자체 위임

오는 10월부터 산업단지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최근 10월 1일부터 산업단지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지도단속 업무 등의 관리권한이 낙동강환경청에서 시·도로 전면 위임돼 모든 배출업소 지도점검기능이 이관, 일원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의 위임결정에 따른 이번 조치로 낙동강환경청에서는 지난 94년 5월 개청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산업단지 배출업소의 인·허가서류 및 지도단속 관련서류 등의 자료를 해당 지자체별로 분류, 인계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낙동강환경청은 원활한 업무의 인수 인계를 도모하고 지자체별 환경담당자의 사전업무 숙지를 돕기 위해 편리한 전면위임 이전인 오는 9월 한달간 환경청에서 40여명의 지자체 환경담당자와 환경청직원이 합동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합동근무 기간에는 산업단지내 허가관련서류 검토 및 지도점검 업무를 같이 수행하며 특별관리사업장으로 분류된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의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낙동강환경청은 “당초 지난 7월부터 관리권한이 위임될 계획이었으나 6.13 지방선거 준비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연기됐다”며 “관리업무 위임 과정의 전환기를 틈탄 불법배출행위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적발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환경출장소는 최근 사상공단과 신평·장림공단 및 녹산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0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7월 11일 밝혔다.

분야별 위반내용은 대기분야의 경우 H산업 등 2곳은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해오다 적발돼 고발됐으며 J주물공업사는 부식, 마모된 방지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경고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환경출장소는 최근 사상공단과 신평·장림공단 및 녹산산업단지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0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7월 11일 밝혔다.

됐다.

수질분야에서는 H금속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해 개선명령을 받았고 D스프링은 폐수저장시설에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고발조치됐다.

비산먼지분야의 경우 N건설산업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건설공사를 벌이다 적발됐다.

한편 부산환경출장소는 올 하반기 중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업무가 부산시로 위임됨에 따라 8월 한달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부산지역 각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 환경오염 5개업소 적발

울산시는 지난 6월 한달간 공해 배출업체 지도단속을 벌여 남양산업 등 5개 업소를 적발,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했다고 지난 7월 11일 밝혔다.

울주군 두동면 남양산업(대표 김진석)은 대기배출시설과 수질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과 환경관리인 미선임으로 각각 경고, 과태료 50만원, 환경관리인 선임명령,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됐다.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그린정공(대표 이병권)은 대기분야에서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허용기준초과 등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과 고발,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웅촌면 고연리 한진소프트산업(대표 전장열)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운영, 도장시설 등이 적발돼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가, (유)선우(대표 하만천)는 배출허용기준초과로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과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동구 화정동 기아자동차 카클리닉(대표 표세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미신고로 고발됐다.

목욕탕·골프장에 절수기 설치의무

9월부터 전국의 모든 목욕탕과 골프장은 수도법이 정한 절수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 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수도법령을 개정,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골프장 등이 9월 28일부터 일정 기준의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목욕탕과 골프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숙박업소는 객실이 10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절수기를 설치해야

하며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동시에 이행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명령을 무시한 업소는 이행 강제금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된다.

환경부, 『악취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아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8일자로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악취방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는 악취발생 및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스티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20여종의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대기중의 농도와 악취민원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내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는 악취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조업정지를 명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연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아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8일자로 입법 예고하였다.

또, 규제지역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생 악취의 외부 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하고,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장의 생활악취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악취발생물질의 부정적 소각을 금지하고, 하수관거,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공공수역에서의 악취를 적절히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악취관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악취판정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악취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악취방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는 악취방지법 제·개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현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악취에 의한 생활피해 예방 등을 고유업무로 추진토록 하여 지

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 입법 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사 친환경 관리감독 강화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 대규모 개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공사를 중지시키는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미이행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관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장 237개 가운데 50%가 넘는 120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원주환경청은 덧붙였다.

에너지융합리화 자금 연계금리 대폭 인하

- 2002.7.1일부로 현행 18%에서
13%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의 에너지융합리화자금 대출금 연계금리를 2002.7.1일부로 현행 18%에서

13%로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해 9월 27일 에 특회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대출 금리를 종전의 고정금리체계에서 시중 금리 변화에도 일정한 금리혜택이 보장되도록 국고채(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번 조치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연체금리(18%)가 지원금리와 비교했을 때 3.0~3.6배의 가산율에 이르는 점에 착안하여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중은행의 연체금리가 연 15%~19% 수준의 고율로 연체개월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의 연체금리 인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구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 증가세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 해마다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의 1천1개 대기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03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의 위반내역은 무허가시설이 72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 15개 업체, 비정상 가동 1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결과 해마다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의 1천1개 대기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03개소를 적발했다.

개 업체, 기타 15개 업체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쇄명령 53개소, 개선명령 14개소, 조업정지 1개소, 기타 35개소였다.

이같은 위반 사업장은 2000년 49개 업체, 지난 99년 25개 업체와 비교할 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5월말 현재 위반사업장 14개소를 적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공기질 향상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위해성 Web GIS 서비스 시작

국립환경연구원 기획과와 환경위해성 연구과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환경위해성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도를 중심

으로 환경위해성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학물질에 대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주소 : riskmap.nier.go.kr

청정생산 기술개발 과제 발굴 추진

반도체 생산공정의 구리도금 기술을 비롯 전자부품의 솔더링 기술, 타이어 재사용 기술 등 청정생산을 위한 30여개 기술개발 과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관련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생산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우선개발 과제 30여개를 발굴, 추진키로 했다.

청정생산은 생산공정에서 원천적으로 환경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로 산업계가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자부는 올 하반기내로 30여 기술개발 과제를 확정해 10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자부 한 관계자는 “지난 1995년부터 1300억원이 투입돼 500개 청정생산 기술 과제의 개발이 진행됐으나 성격상 소규모 과제여서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했다”면서 “앞으로는 이번 발굴 과제를 포함해 과제를 2~3년의 장기·계속 과제로 대형화해 업계 전반의 실질적인 청정생산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강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자연 생태계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동강 유역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 활동이 펼쳐진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강원도와 영월, 평창, 정선군 등과 합동으로 불법 래프팅과 어로행위, 멸종위기 및 보호 대상 야생 동·식물의 포획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6월 26일 밝혔다.

7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7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도 다른 재활용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5일 매립지의 안정화를 해치고 소각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리 수거는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비닐봉투만 대상으로 하며, 흰색과 나머지 색깔 등 두 종류로 나뉘어 같은 색깔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질소·인 처리기술 순회교육

환경부는 지난 7월 12일 상수원의 부

7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도 다른 재활용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25일 매립지의 안정화를 해치고 소각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富)영양화와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

고 있는 질소와 인의 배출 허용기준이 내년부터 전국 모든 폐수배출업소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7개 지역에서 질소·인 처리기술과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현재는 한강 팔당호와 금강 대청호, 낙동강 일부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청정지역내 배출업소에서는 질소 30ppm과 인 4ppm 이하로, 기타 지역에서는 60ppm과 8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이번 순회교육은 지난 6월 14~27일 지방환경청별로 실시되었으며 교육대상은 질소와 인 배출업소의 환경기술인과 시·도 및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오염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업소당 최고 50억원까

지 융자해 주고 있다.

비산먼지 발생 604곳 적발

-현대건설·금강종합건설 등 방진덮개 등 시설 미흡

세계인의 축제인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도 건설·토목공사, 골재채취장, 시멘트 운반차량 등 상당수 업체들이 비산먼지를 흘날리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월드컵을 앞둔 지난 4월 한달 동안 전국 1만2,442개 비산먼지 발생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그중 604곳을 적발, 각종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건물해체공사장, 골재채취장, 토사·석탄·시멘트 운반차량 등이었다.

적발업체들은 방진망, 방진벽, 세륜시설,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적발업체 중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253곳에 대해서는 경고를,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나 조치가 미흡한 183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억제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58곳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을 각각 내렸다.

특히 이번 적발업체 가운데는 현대건설과 금강종합건설 등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인천국제공항철도를 건설하면서 야적장 분체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지 않아 먼지를 흘날리다

고발조치됐다. 또 토사를 운반하면서 방진덮개 등 관련기준을 지키지 않은 휴

